

고성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6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3. 20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 규정 삭제와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처리 규정을 위반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을 지역상품권 등 현물 지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제한 등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종량제봉투 판매시 현금 판매로 현실에 맞게 불필요한 규정 삭제(안 제15조)
- 나. 신고대상 폐기물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,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 목적 전문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 제한(안 제25조의2)
- 다. 신고포상금 지급시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의2)
- 라. 개인이나 단체별 지급 총액은 월20만원,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 (안 제25조의2)
- 마. 건설폐기물(5톤미만) 등 처리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 가격에 맞게 조정(안 별표4)

3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05-659(2005. 12. 28. ~ 2006. 1. 16)
- 의견 및 제출사항 없음

나. 관계법령

- 폐기물관리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
-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

4. 본문 :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고성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”를 “고성군 폐기물 관리예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공업배치및공장설립예관한법률”을 “「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예관한법률」”로 하며, 동조제3호 및 동조제4호 중 “대기환경보전법,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·진동규제법”을 각각 “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환경보전법」 또는 「소음·진동규제법」”으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제16조제1호 중 “도시계획법”을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예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동조제2호 중 “도시공원법”을 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자연공원법”을 “「자연공원법」”으로 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5조의2(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) ①신고대상 폐기물 불법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1.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(담배꽂초, 휴지 등)을 버리는 행위
2. 간이보관기구(비닐봉지, 천보자기 등)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
3.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
4. 차량,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
5.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(건축폐자재류)을 버리는 행위
6.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

②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하여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과태료 부과금액이 300천원까지는 그 부과금액의 50%까지 지급(이하 “기본

지급액”이라 한다.)

2. 과태료 부과금액이 300천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금액의 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에 가산하여 지급

③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.

④개인 또는 단체별 포상금 총액은 월 20만원,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⑤사진촬영 신고의 경우 사진촬영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
별표3 중 (주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주)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.

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1조 중 “폐기물관리법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”으로 하고, 제18조제1호 중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”으로 하며, 제27조제2항 중 “행정절차법”을 “「행정절차법」”으로 하고, 제31조 중 “지방세법”을 “「지방세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4]

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

대 상	기 준	처리수수료		
		계	수집·운반비	처리비
건설폐기물(콘크리트류, 철재류,석재류,토사류, 페아스콘류 등)	톤당	17,500원	-	17,500원
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(암롤박스 수거 포함)	kg당	150원		

※ 대형폐기물은 제외하고 복토를 목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명 : <u>고성군폐기물관리예안</u>		제명 : <u>고성군 폐기물 관리예안</u>		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		
1. (생략)		1. (현행과 같음)		
2. "사업장폐기물"이라 함은 <u>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</u>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영 제2조제2항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·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·지정폐기물·건설폐기물로 구분한다.		2. ----- 「산업집적활성화 <u>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</u> 」 ----- ----- -----		
3. "사업장생활계폐기물"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<u>대기환경보전법</u> , <u>수질환경보전법</u> 또는 <u>소음·진동규제법</u>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·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.		3. ----- 「 <u>대기환경보전법</u> 」, 「 <u>수질환경보전법</u> 」 또는 「 <u>소음·진동규제법</u> 」 ----- ----- -----		
4. "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"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<u>대기환경보전법</u> , <u>수질환경보전법</u> 또는 <u>소음·진동규제법</u>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·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.		4. ----- 「 <u>대기환경보전법</u> 」, 「 <u>수질환경보전법</u> 」 또는 「 <u>소음·진동규제법</u> 」 ----- ----- -----		
5 내지 9. (생략)		5 내지 9. (현행과 같음)		
제15조(봉투판매 대금납기 및 징수방법) 채권보증을 위한 판매소의 지정보증금30만원이상을 군 금고에 예치한 봉투판매소는 공급대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.		(삭제)		
제16조(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) ① (생략)		제16조(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)① (현행과 같음)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1. 유원지(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)</p> <p>2. 공원(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)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1. ----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-----</p> <p>2. ---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---- 「자연공원법」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5조의2(신고자 포상금등의 지급) 군수는 폐기물을 불법투기등의 행위를 신고하여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과태료 부과금액이 300천원까지는 그 부과금액의 50%까지 지급(이하 “기본지급액”이라 한다.)</p> <p>2.과태료 부과금액이 3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에 추가하여 지급</p>	<p>제25조의2(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) ①신고대상 폐기물 불법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/p> <p>1.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(담배꽂초, 휴지 등)을 버리는 행위</p> <p>2. 간이보관기구(비닐봉지, 천보자기 등)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</p> <p>3.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</p> <p>4. 차량,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</p> <p>5.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(건축폐자재류)을 버리는 행위</p> <p>6.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</p> <p>②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하여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과태료 부과금액이 300천원까지는 그 부과금액의 50%까지 지급(이하 “기본지급액”이라 한다.)</p> <p>2.과태료 부과금액이 300천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금액의 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에 가산하여 지급</p> <p>③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④개인 또는 단체별 포상금 총액은 월 20만원,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</p> <p>⑤사진촬영 신고의 경우 사진촬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3] (주)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하며 그 외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1당 20원으로 하고 순수 처리비는 톤당 2,200원으로 한다.</p> <p>[별표4] 건설폐기물등 처리수수료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대 상</th> <th rowspan="2">기준</th> <th colspan="3">처리수수료(원)</th> </tr> <tr> <th>계</th> <th>수집·운반비</th> <th>처리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건설폐기물 (콘크리트류, 목재류, 철재류, 석재류, 토사류, 페아스콘) 및 기타 폐기물</td> <td>톤당</td> <td>17,500</td> <td>-</td> <td>17,5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건설폐기물중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는 수수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.</p>	대 상	기준	처리수수료(원)			계	수집·운반비	처리비	건설폐기물 (콘크리트류, 목재류, 철재류, 석재류, 토사류, 페아스콘) 및 기타 폐기물	톤당	17,500	-	17,500	<p>[별표3] (주)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.</p> <p>[별표4]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대 상</th> <th rowspan="2">기준</th> <th colspan="3">처리수수료</th> </tr> <tr> <th>계</th> <th>수집·운반비</th> <th>처리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건설폐기물 (콘크리트류, 철재류, 석재류, 토사류, 페아스콘류 등)</td> <td>톤당</td> <td>17,500원</td> <td>-</td> <td>17,500원</td> </tr> <tr> <td>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(암물박스 수거 포함)</td> <td>kg당</td> <td colspan="3">15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대형폐기물은 제외하고 복토를 목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대 상	기준	처리수수료			계	수집·운반비	처리비	건설폐기물 (콘크리트류, 철재류, 석재류, 토사류, 페아스콘류 등)	톤당	17,500원	-	17,500원	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(암물박스 수거 포함)	kg당	150원		
대 상			기준	처리수수료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계	수집·운반비		처리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설폐기물 (콘크리트류, 목재류, 철재류, 석재류, 토사류, 페아스콘) 및 기타 폐기물	톤당	17,500	-	17,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 상	기준	처리수수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계	수집·운반비	처리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설폐기물 (콘크리트류, 철재류, 석재류, 토사류, 페아스콘류 등)	톤당	17,500원	-	17,5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(암물박스 수거 포함)	kg당	15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